

#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박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4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21.

발의자 : 박재호 · 이상현 · 심기준

김현권 · 금태섭 · 이철희

한정애 · 이용득 · 김영진

유승희 · 전재수 · 윤준호

김해영 · 민홍철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이웃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.

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,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업무시간 등이 아닌 유휴시간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,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, 개방시간,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

있도록 하여 주차난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3항부터  
제15항까지 신설).

##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에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, 국공립학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(이하 이 조에서 “개방 주차장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⑭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, 개방시간, 보조금의 지원,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) ① ~ ⑫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) ① ~ ⑫ (현행과 같음) <u>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, 국공립학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(이하 이 조에서 “개방주차장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⑭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, 개방시간, 보조금의 지원,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</u>
<u>&lt;신 설&gt;</u>	
<u>&lt;신 설&gt;</u>	

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